

제3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 3. 10.(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청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이우청·박순범·박승직·백순창·김창기·남진복·

도기욱·황재철·최덕규·신효광·이철식·남영숙 의원(12명).

2. 제안이유

- 도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상향 또는 제외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수를 확대하여 위원회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 대상규정 신설(안 제2조의3)
- 건축위원회 위원 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안 제4조)

4. 관련법령

- 「건축법」 제4조, 제11조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건축조례」 제4조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불임
-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불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불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2023. 2. 28. ~ 3. 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9호
- 의견제출: 의견 없음

7.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 필요성

- 도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상향하고 사업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제외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에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의 위촉 위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

- 법 단서¹⁾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3)
 - 층수가 30층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²⁾ 제29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제외
- 건축위원회 위원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이상 70명이하를 40명이상 100명이하로 개정하여 위원수 확대
 - 위원 중복위촉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³⁾를 따름

1) 건축법 제11조 2항 1호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체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한 법

3)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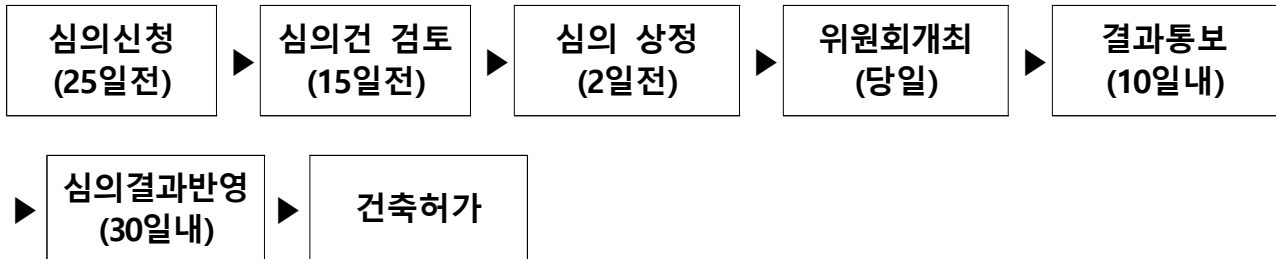
- 금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내에서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허가전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30층이상으로 상향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제외함으로써 시장·군수의 건축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며,
- 40명에서 70명이하인 건축위원회의 위촉 위원수를 40명에서 100명이하로 개정함으로써, 분야별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복위촉 및 과도한 연임을 방지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하는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및 현황

□ 건축위원회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



* 건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 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 사전승인 심의 소요기간 최소 60일 이상 소요

- 사전승인 심의 최소 30일이상 소요
-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견 반영 등 추가 30일이상 소요

□ 도지사 사전승인 연도별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건수	26건	11건	7건	8건	7건	34건	38건	

참고 2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현황

□ 건축위원회 현황

○ 구 성 : 66명(건축계획·설계 등 9개 전문분야별 구성)

- 근 거 :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4조, 제6조
- 구 성 : 66명 (당연직 3, 위촉직 63)
- 임 기 : 2023. 1. 20. ~ 2026. 1. 19.(3년간)
- 기 능 : 건축허가 전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및 건축관련 심의
- 운 영 : 연간 13회 49건(매년 증가)